

#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9-9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 : 2019. 5. .  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1. 요구이유

거창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0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,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·수탁계약 절차 이행코자 『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, 『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』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상사무 :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

나. 시설현황

○ 골프연습장

부지면적	건축물 규모				타석수	비 거 리
	층수	건축면적	연면적	구조		
3,917㎡	지상2층	258.0㎡	300.2㎡	철근콘크리트구조	10타석	100m



- 다.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
- 라. 수탁자격 :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
- 마.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- 바. 예산지원 : 없음(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

골프연습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.

#### 나. 향후계획

- 수탁기관의 선정(공개모집): 2019년 06월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(6~9명) : 2019년 07월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: 2019년 07월
- 위탁계약 체결 : 2019년 07월
- 위탁운영 : 2019년 08월

#### 다. 위탁운영 선정계획 : 따로 붙임

#### 라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(관리위탁)

#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민간 위탁 계획

## □ 배 경

-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04월30일로 계약 종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·수탁계약 절차이행

## □ 위탁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(체육시설 위탁·위임)

## □ 위탁대상

- 거창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
  - 골프연습장 운영
  - 골프연습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

## □ 위탁현황

- 골프연습장
  - 시설명: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
  - 위 치: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-36번지 일원
  - 시설규모

부지면적	건축물 규모				타석수	비거리
	층수	건축면적	연면적	구조		
3,917㎡	지상2층	258.0㎡	300.2㎡	철근콘크리트 구조	10타석	100m

## □ 추진계획

- 위탁기간 : 5년 이내 (1회 재 계약가능)
- 위탁자 선정방침
  - 수탁기관의 공개모집
  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
  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
  
- 수탁기관 모집 : 공개모집
  - 공 고 :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
  
- 수탁자격 :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
  
- 추진일정
  - 의회동의 : 2019년 06월
  - 수탁자 모집공고 : 2019년 06월
  -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: 2019년 07월
  -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: 2019년 07월
  - 위·수탁 계약체결 : 2019년 07월
  - 협약서 공증절차이행 : 2019년 07월
  - 시설 인계·인수 및 운영 : 2019년 08월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[시행 2018.10.06.] [법률 제15794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 □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

제1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「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

1. 재산의 표시, 사용·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
2.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
3. 관리위탁 기간
4. 위탁료,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5.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,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 
(항전부개정 2014.10.01)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(2014.10.01)

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(항전부개정 2014.10.01 2015.12.10.)

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(2014.10.01. 2015.12.10.)

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(2014.10.01)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.

## □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## □ 「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

제23조(체육시설 위탁·위임)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·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5조·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.(조전 부개정 2018.10.31.)